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5. 15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0. 5.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5. 25)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태경 기획감사실장) ▷ 2000. 5. 22 제1차 본의회

가. 제안이유

- '99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 정리
-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와 경상적경비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고 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 5,593,347천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5,593,347	계	5,593,347
세 외 수입	3,242,926	일반행정비	1,805,256
지방교부세	34,000	사회개발비	963,185
조정교부금	995,000	경제개발비	2,595,693
국고보조금	1,284,276	민 방 위 비	56,677
시비보조금	37,145	지원및기타경비 (예 비 비)	172,536

□ 특별회계 (6건) : 1,510,217천원

- 의료보호기금 : 22,016천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178,933천원
- 주차장 : 538,325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667,124천원
-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 : 102,105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1,714천원

3.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액	증감율(%)
총 계	105,107,805	98,004,241	7,103,564	7.2
일반회계	84,393,389	78,800,042	5,593,347	7.1
특별회계	20,714,416	19,204,199	1,510,217	7.8
의료보호기금	9,081,736	9,059,720	22,016	0.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49,691	470,758	178,933	38.0
주차장	5,693,725	5,155,400	538,325	10.4
주거환경개선사업	894,045	226,921	667,124	2.9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4,352,105	4,250,000	102,105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3,114	41,400	1,714	4.1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84,393,389	100	78,800,042	100	5,593,347	7.1
지방세	18,974,000	22.5	18,974,000	24.1	-	-
세외수입	16,422,986	19.5	13,180,060	16.7	3,242,926	24.6
경상적세외수입	9,767,018	11.6	9,766,028	12.3	990	-
임시적세외수입	6,655,968	7.9	3,414,032	4.4	3,241,936	94.9
지방교부세	34,000	-	-	-	34,000	-
조정교부금	16,596,831	19.7	15,601,831	19.8	995,000	6.3
보조금	31,365,572	37.2	30,044,151	38.1	1,321,421	4.4
국고보조금	17,461,503	20.7	16,177,227	20.5	1,284,276	7.9
시비보조금	13,904,069	16.5	13,866,924	17.6	37,145	0.2
지방채	1,000,000	1.1	1,000,000	1.3		

□ 세출예산내역

○ 기 능 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84,393,389	100	78,800,042	100	5,593,347	7.1
일반행정	26,883,076	31.8	25,077,820	31.8	1,805,256	7.2
사회개발	46,463,634	55.1	45,500,449	57.8	963,185	2.1
경제개발	8,879,130	10.5	6,283,437	8.0	2,595,693	41.3
민방위비	310,870	0.4	254,193	0.3	56,677	22.3
지원 및 기타경비	1,856,679	2.2	1,684,143	2.1	172,536	10.2

○ 성 질 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예 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84,393,389	100	78,800,042	100	5,593,347	7.1	
경상경비	소 계	35,359,737	41.9	34,235,445	43.4	1,124,292	3.2
	인 건 비	19,643,774	23.3	19,031,843	24.1	611,931	3.2
	경상적경비	15,715,963	18.6	15,203,602	19.3	512,361	3.3
사업예산	소 계	46,268,443	54.8	41,391,926	52.5	4,876,517	11.7
	보조사업비	35,723,769	42.3	34,612,112	43.9	1,111,657	3.2
	자체사업	10,544,674	12.5	6,779,814	8.6	3,764,860	55.5
채무상환	소 계	216,250	0.3	816,250	1.1	△600,000	△73.5
	지방채상환	216,250	0.3	216,250	0.3	-	-
	채무무담행위상환			600,000	0.8	△600,000	-
예비비등	소 계	2,548,959	3.0	2,356,421	3.0	192,538	8.1
	예 비 비	1,173,458	1.4	1,467,893	1.9	△294,435	△20.0
	기 타	1,375,501	1.6	888,528	1.1	486,973	54.8

○ 품 목 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예 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84,393,389	100	78,800,042	100	5,593,347	7.1
인 건 비	19,643,774	23.3	19,247,732	24.3	396,042	3.2
물 건 비	11,501,853	13.6	10,968,272	14.0	533,581	4.8
이 전 경 비	29,013,038	34.4	27,919,253	35.5	1,093,785	3.9
자 본 지 출	22,034,283	26.1	18,852,771	23.9	3,181,512	16.8
보 전 재 원	175,000	0.2	175,000	0.2	-	-
내 부 거 래	385,010	0.4	169,121	0.2	215,889	127.6
예비비 및 기타	1,640,431	2.0	1,467,893	1.9	172,538	11.7

□ 주요 증감 내용 ▷ 5,593백만원

- 필 수 경 비 _____ 803백만원
- 경 상 사 업 _____ 506백만원
- 물 품 구 입 비 _____ 405백만원
- 투 자 사 업 비 _____ 3,454백만원
- 국·시비보조사업 _____ 720백만원
- 예 비 비 _____ △295백만원

다.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 상 적 세외수입	임 시 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계	예 산 액	20,714,416	4,773,151	6,389,546	7,235,237	2,316,482
	기정예산액	19,204,199	4,771,651	5,383,548	7,235,237	1,813,763
	증 감	1,510,217	1,500	1,005,998	-	502,719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9,081,736	1,800	31,217	7,235,237	1,813,482
	기정예산액	9,059,720	1,800	8,920	7,235,237	1,813,763
	증 감	22,016	-	22,297	-	△281
주 차 장	예 산 액	5,693,725	507,400	5,186,325	-	-
	기정예산액	5,155,400	507,400	4,648,000	-	-
	증 감	538,325	-	538,325	-	-
장립유수지 이 설	예 산 액	4,352,105	4,251,500	100,605	-	-
	기정예산액	4,250,000	4,250,000	-	-	-
	증 감	102,105	1,500	100,605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 의 2건	예 산 액	1,586,850	12,451	1,071,399	-	503,000
	기정예산액	739,079	12,451	726,628	-	-
	증 감	847,771	-	344,771	-	503,000

□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계	예산액	20,714,416	796,205	14,576,397	5,341,814
	기정예산액	19,204,199	770,284	13,804,310	4,629,605
	증 감	1,510,217	25,921	772,087	712,209
의료보호 기금	예산액	9,081,736	-	9,048,719	33,017
	기정예산액	9,059,720	-	9,049,000	10,720
	증 감	22,016	-	△281	22,297
주차장	예산액	5,693,725	755,555	72,440	4,865,730
	기정예산액	5,155,400	750,854	68,910	4,335,636
	증 감	538,325	4,701	3,530	530,094
장립유수지 이 설	예산액	4,352,105	21,000	4,180,000	151,105
	기정예산액	4,250,000	-	4,180,000	70,000
	증 감	102,105	21,000	-	81,10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 외 2건	예산액	1,586,850	19,650	1,275,238	291,962
	기정예산액	739,079	19,430	506,400	213,249
	증 감	847,771	220	768,838	78,713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총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결산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 22억1,283만원 증가액과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에 대비 7.2%, 71억 356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1,051억 78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5,396,986천원으로 총 예산의 42%에 머물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8,996,403천원으로 총예산의 58%를 구성하고 있어 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열악하고 지방

세 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임.

- 세외수입은 경우 총 3,242,926천원이 증액된 16,422,98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29,103천원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에 있어 6억원이 증액된 830,000천원으로 편성.
-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212,833천원이 증가된 4,162,833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연도에 지출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고, 그 연도에 지출할 경비는 타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예산편성의 대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나 지난해 4,162,833천원에 이르는 잉여금 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추계, 치밀한 계획 미흡 등의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됨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고 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에 있어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의료비, 경로식당 운영비,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삭감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0월 시행과 맞추어 2000년도 3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되어 있던 한시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생계비를 9월까지 연장하는데 1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외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20,600천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비 10,000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73,189천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76,482천원등이 증액되었음.
-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사업비 삭감조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부랑인시설 생계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삭감되고, 한시 생계보호자 생계비 62,500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23,750천원, 노인 요양시설 개·보수비 10,000천원, 고용촉진훈련비 18,29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시비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장애인 특화사업비 등이 삭감되었고,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에 40,000천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15,000천원, 다대포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에 60,000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4,000천원, 방독면 구입비 27,086천원, 무의탁노인세대지원비 27,600천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 20,000천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음.

- 특히,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관서 의장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보조금 증액과 삭감, 반환에 있어 정확하게 신청하였다면, 계획변경에 의한 증감사항은 차지하더라도 반환 규모는 최소 경비잔액이 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사업은 다소 많은 경비가 반환되어, 보조금사업 계획추진과 제도운영 상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43억9,338만원으로 기정예산788억4만원 보다 7.1%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68억 8,307만원, 사회개발비 464억6,363만원, 경제개발비 88억7,913만원, 민방위비 3억1,087만원, 기타경비가 18억5,667만원으로 편성.
-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1억2,429만원이 늘어난 353억5,973만원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462억6,844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1,625만원이며, 예비비는 25억4,8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2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여야 됨.
-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와 기정예산에 의한 예비비의 활용이나 전용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추경사유의 타당성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세출 부문에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검토 미흡 등으로 추경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됨.

□ 새출분야

- 일반행정비중 필수경비로서 일용인부임과 기타 보수직의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의정활동비 등의 기준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또한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을 반영한 것은 일용인부 등의 퇴직에 따른 재취업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에 지원토록 배려가 있었으며,
-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패소 배상금이 증액 편성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구 의원 보궐선거 사무비용, 전기료, 상하수도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고,
- 물품구입비는 의회사무국의 집기구입과 건설차량 구입 등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사회개발비 분야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생계지원비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의 증축과 노인들을 위한 생계비, 교통비, 무의탁 노인세대와 경노당 지원 등의 경비는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생계비와 운영비, 부랑인 시설 생계비와 운영비 등은 삭감되었으나, 결식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요보호 아동 대학진학 자금이 새로 편성되었고, 작년에 개관한 여성회관 화장실 개수공사는 사업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다대포해수욕장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편성되어있고, 하수유지관리 정비공사로 괴정1동 동아공고 뒷편 침수 해소 공사 등에 시비보조금 2억9,400만원, 도로유지 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낙동로~괴정천간 도로개설공사와 신평2동 염색단지내 도로정비 공사 사업비 8억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고,
- 또한 자체사업인 괴정3동 북개천~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구평동 대림아파트~항만배우도로간 개설공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설사업의 우선 순위는 충분히 검토한 후 증기재정계획에 따라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무궁화 화단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한 발주사업으로 지방교부금 3,4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

- 민방위비에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와 방독면 구입을 위한 물품 취득비가 편성되어 있고, 기타 지원경비 부분은 '99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음.
- 그 외 투자 및 채무 부담행위로서 구청사 제2별관 신축 예산으로서 시설비와 채무부담액이 편성되어 있음.

라. 특별회계분야

- 특별회계세입예산의 재원구성내역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92억419만원보다 7.8%가 늘어난 207억1,441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세부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 보조금 잔액 22,016 천원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되었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 순세계 잉여금 178,933천원 중 100,000천원만 소득지원 용자금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등으로 계상 하였으나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인 만큼 예비비 규모는 최소한도내에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9년 순세계 잉여금 1,714천원을 감천 2동 공동변소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편성 계상하였음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년도로서 특별회계 존치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9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총예산 5,693,725천원중 85.5%인 4,865,730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목적을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구상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 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보고자 : 간사 최영만 위원)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년 5월 25일, 최영만 의원 외 6인

나.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비보조금 부분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 있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경비 및 불요불급한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조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예산총칙

(단위 : 천원)

회 계 별	당 초 원 안		수 정 안	
	세입세출 예산총칙	일시차입 한도액	세입세출 예산총칙	일시차입 한도액
계	105,107,805	2,938,000	105,092,805	2,938,000
1. 일반회계	84,393,389	2,365,000	84,378,389	2,365,000
2. 특별회계	20,714,416	573,000	20,714,416	573,000
의료보호기금	9,081,736	271,000	9,081,736	271,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49,691	14,000	649,691	14,000
주 차 장	5,693,725	154,000	5,693,725	154,000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894,045	6,000	894,045	6,000
장림유수자시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4,352,105	127,000	4,352,105	127,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3,114	1,000	43,114	1,000

-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6,842천원으로 한다

(2) 일반회계 세입분야

- 총 84,393,389천원 중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금 15,000천원 삭감

(3) 일반회계 세출분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경정예산액	위원회수정액		조정예산액
장 관	항	목		삭 감	증액	
계			1,190,384	△618,384	603,384	1,175,384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부행정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12,000	△3,000		9,000
		인사관리 (포상금)	28,000	△7,000		21,000
	재무행정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4,704	△4,704		0
		청사관리 (시설및부대비)	1,100,000	△558,000		542,000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10,680	△10,680		0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체육진흥 관 리	체육진흥 (시설및부대비)	30,000	△30,000		0
사회개발 사회보장	여성복지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5,000	△5,000		0
자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173,458		603,384	1,776,842

라.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 수정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 수정의결

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 원안의결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 원안의결

붙 임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내역 1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증액)요구 내역

<일반회계 세입> : 보조금, 시비보조금, 시비보조사업비 15,000천원 삭감
(동네체육시설 확충)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과 목			구 청 장 제출예산액	위원회 수정액	조 정 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비고
관	항	세항					
			1,190,384	△618,384	572,000		
일반행정	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12,000	△3,000	9,000	· 구민대축제 출연자 보상비 일부 삭감	p60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28,000	△7,000	21,000	·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 시찰 10쌍(20명)×700×2회 ⇒15쌍(30명)×700×1회	p61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704	△4,704	0	· 대소변기 자동세정제	p64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00,000	△558,000	542,000	· 구청사 제2별관 건립 (건축비, 감리비 삭감)	p65
사회개발	체육진흥 관 리	체육진흥 (시설및부대비)	30,000	△30,000	0	· 동네체육시설 확충	p69
일반행정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10,680	△10,680	0	· 건설차량 구입비	p80
사회개발	여성복지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5,000	△5,000	0	· 화장실 개수공사	p123